수도요금 미납자에 대한 수도 공급 중단 정책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 116900-116926]

2025년 3월 18일 산타이네즈 강 수자원 보호 구역, 제1 개선구역 이사회의 결의안 제851호에 의해 채택됨

1. **정책 적용**. 본 수도 서비스 요금 미납에 따른 급수 중단 정책(이하 '정책')은 산타이네즈 강 수자원 보전 관리구 제1개선구(이하 '관리구')가 개정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수도 공급 중단 보호법(California Water Shutoff Protection Act),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제116900조 이하(이하 '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채택한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본 정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동주택 및 농장 근로자 주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용 및 농촌 주거/제한적 농업용 계정을 포함하여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구의 수도 서비스 계정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법의 적용 범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의 여러 조항은 행정적 효율성과 관리구 고객 간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리구의 모든 계정에 적용되도록 작성되었다.

2. **문의처 정보.** 관리구에서 발행하는 수도 요금이나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방지 옵션에 대해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805) 688-6015 로 전화하거나 general@syrwd.org 로 이메일을 보내 관리구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정상 영업 간 동안(공휴일 제외) 3622 Sagunto Street, Santa Ynez, California 93460 에 있는 구청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3. **청구 기간 및 연체료**. 관리구가 발행하는 수도요금 고지서는 고지서에 명시된 월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는 우편 및/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다. 납부기한 당일 업무 종료 시점까지 전액이 납부되지 않은 요금은 연체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체료가 미납 잔액에 부과된 날로부터 10일(달력일 기준) 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 관리구는 해당 계정에 대해 연체 및 급수 중단 예정 통지를 발행할 수 있다. 관리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객의 연체료 면제 요청을 검토할 수 있다. 단, 해당 요청은 연체일로부터 2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관리구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또한 요청 고객이 이전 12개월 동안 연체료 면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연체료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본 정책 제6조에 따른 검토 또는 이의제기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구는 20달러이하의 연체 잔액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기간 종료 시점에 20달러 이하의 미납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청구 기간으로 이월되어 고객 계정에 추가된다.

4. **수도 요금 연체자에 대한 수도 공급 중단.** 수도요금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체된 상태로 60일(달력일 기준) 이상 경과한 경우, 관리구는 해당 서비스 주소에 대한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1 고객 및 거주자에 대한 서면 통지. 관리구는 수도 서비스 중단 예정일 최소 10일 전에 기록상 고객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러한 서면 통지는 60일 연체 기간 중 더 이른 시점에 제공될 수 있으며, 위 제3항에서 설명한 연체 및 급수 중단 예정 통지의 형태로 발송될 수 있다. 고객의 주소가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동산의 주소와 다른 경우, 해당 통지서는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동산의 주소로

"거주자" 앞으로 발송된다. 단, 미국 우편국을 통해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는 부동산 주소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데 대해서는 당 관리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a) 공식 고객 이름 및 주소;

(b) 해당 벌금을 포함한 연체 금액;

(c)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기한;

(d) 고객이 아래 4.4조 또는 5조에 따라 해당 연체 벌금을 포함한 연체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대체 납부 일정, 상환 계획, 임시 납부 연기 또는 납부 금액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및 기한;

(e) 고객이 수도 요금 청구서의 검토 및 이의 제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f) 거주 세입자 또는 사용자가 공식 기록된 고객이 아닌 경우 해당 계좌에 연체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의 고객이 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정보;

(g) 관리구의 문의처 정보.

4.2 거주자 또는 사용자.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이동식 주택 단지 또는 보건안전법에 정의된 노동 캠프 내의 영구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주거 시설의 소유주,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입주자가 아닌 등록된 고객이라는 사실이 관리구에 통보된 경우, 본 구역은 수도 공급 중단 최소 10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주거지의 거주자들에게 계정이 연체 상태이며, 해당 주거지에 대한 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시도할 것이다. 서면 통지는 "거주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위 제3항에 명시된 '연체 및 공급 중지 예정 통지서'의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통지는 해당 주거지 거주자들에게 연체된 계좌의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본 관리구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린다. 해당 거주자들이 본 구역의 고객이 되기 위한 추가 약관은 아래 제8항에 명시되어 있다.

4.3 서비스 중단 전 추가 안내 통지. 수도 요금 고지서가 미납 상태로 남아 있고, 본 정책에 따라 미납 시 서비스 중단 가능성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된 경우(해당 통지에는 위 제3항에 명시된 '미납 및 중단 예정 통지서'가 포함될 수 있음), 관리구는 전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서비스 주소로의 수도 공급 중단 전에 추가적인 안내 통지를 제공하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안내 통지에는 수동 전화 통화, 자동 전화 통화, 문고리 안내문 또는 관리구가 결정한 기타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

4.4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이 유예되는 특별한 의료 및 재정적 상황.

(a) 관리구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연체된 거주지의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다.

(i) 캘리포니아 복지 및 제도 법안의 14088(b)(1)(A)조에 정의된 바에 따라 고객 또는 고객의 세입자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1 차 진료 제공자에게 주거용 수도 서비스의 중단이 주거용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는 인증을 받아 관리구에 제출하며;

(ii) 고객은 (a) 고객 가구의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Supple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 Program 또는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 Program 또는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 Program 을 이용하고 있거나 (b) 고객이 위증의 처벌에 따라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임을 진술한 경우 고객이 정상적인 청구 주기 동안 재정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문서를 통해 관리구에서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 거주용 수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을 증명하며;

(iii) 고객은 관리구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해당 벌금을 포함한 모든 연체 금액과 관련하여 상환 계획, 대체 납부 일정 또는 연기나 감액 납부 계획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

(b) 본 제 4.4조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은 상기 제4.4조 (a)항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관리구에 연락할 책임이 있다. 이는 '미납 및 단수 예정 통지'를 받은 후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완료되어야 하면, 늦어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c) 4.4 (a)-(b)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고객이 만족하는 경우 관리구는 아래의 5.2 에서 5.5 까지 추가적으로 명시한 대로 단독 및 절대적 재량으로 고객에게 다음 지급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

(i) 대체 지급 일정 참여;

(ii) 미지급 잔액 상환;

(iii) 임시 지불 연기; 또는

(iv) 다른 요금 납부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 미지급 잔액 부분적 감액.

(d) 본 4.4 조에 따라 관리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불 옵션의 조건, 조건 및 기타 매개 변수는 관리구가 단독 재량으로 설정한다.

(e) 관리구에서 제공하는 지불 옵션과 조건으로 12 개월 이내에 해당 벌금을 포함한

모든 연체 금액의 고객이 관리구에 지불하게 된다. 단, 비상 상황을 감안하여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f) 관리구는 상기 제 4.4 조(a)-(e)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고객에게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i) 60 일 이상 고객이 대체 납부 일정, 상환 계약 또는 관리구가 제공한 지불 계획을 연기하거나 감액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ii) 관리구가 제공하는 대체 납부 일정, 상환 계약 또는 지불 계획 연기 또는 감축을 수행하는 동안 고객은 60 일 이상 현재 거주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관리구는 최소 영업일 5 일 전에 해당 거주지 눈에 띄는 곳에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최종 통지를 게시한다. 4.4(f)조에 따른 최종 통지와 서비스 중단은 상기 4.1 조에 따라 고객에게 이미 제공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아래 6 조의 검토 또는 이의 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g) 4.4 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구의 결정은 관리구 총괄 관리자 및/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5. 대체 납부 계획 및 관련 절차.

5.1 고객이 지불 계획 옵션을 요청하는 절차. 위 제4.4조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교육구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체 결제 방식과는 별개로, 본 구역은 전적인 재량에 따라, 본 정책에 따라 고객이 본 구역에 제출한 서면 요청에 응하여, 고객이 만기일까지 미납금 전액(적용되는 벌금 포함)을 납부할 수 없는 긴급 상황 또는 기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다음의 하나 이상의 납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i) 대체 납부 일정 참여; (ii) 미납 잔액의 분할 상환; (iii) 일시적 납부 유예; 또는 (iv) 미납 잔액의 일부 감면. 단, 이러한 감면으로 인해 다른 요금 납부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a) '연체 및 공급 중지 예고 통지서'를 받은 고객은 해당 연체금 전액(적용되는 위약금 포함)을 대체 납부 방법을 통해 납부하겠다는 서면 요청서를 구역에 제출할 수 있다. 고객의 서면 요청서는 '연체 및 공급 중지 예고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구역에 제출되어야 한다. 10일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요청은 기한을 넘긴 것으로 간주되며, 관리구는 이를 접수, 검토 또는 결정할 의무가 없다. 본 제5.1(a)항의 목적상, 대체 납부 방법에 대한 고객의 서면 요청은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소인일자로, 전자우편 또는 정상 업무 시간 중 구(District) 사무실에 직접 전달된 경우 전달일자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객의 대체 납부 방식 요청이 구역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대체 납부 방식을 제공하거나 승인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본 5.1 조에 따라 관리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불 옵션의 조건, 조건 및 기타 매개 변수는 관리구가 단독 재량으로 설정한다.

b) 본 제5.1조에 따라 관리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체 결제 수단의 약관, 조건 및 기타 모든 사항은 관리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c) 관리구가 납부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옵션의 조건에 따라 고객은 적용되는 연체료를 포함한 전체 연체 금액을 최대 12개월 이내에 관리구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단, 관리구는 통상적으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d) 고객이 본 제5조에 따라 대체 납부 방안에 동의한 경우, 관리구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고객에 대한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i) 고객이 관리구가 제공한 대체 납부 일정, 분할 상환 약정 또는 납부 유예·감면 계획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관리구가 제공한 대체 납부 일정, 분할 상환 약정, 납부 유예 또는 감면 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고객이 30일 이상 현재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관리구는 서비스 중단 최소 영업 5일 전에 해당 부동산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수도 서비스 중단 의사에 대한 최종 통지서를 게시한다. 본 제5.1(d)항에 따른 최종 통지 및 서비스 중단은 상기 제4.1항에 따라 고객에게 이미 제공된 정보를 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아래 제6항의 심사 또는 이의 제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 제5.1조 및 아래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구 차원의 결정은 관리구의 총괄 관리자 및/또는 그 지명인에게 위임되며, 해당 관리자 또는 지명인이 이를 결정한다.

5.2 대체 납부 일정. 상기 4.4 조 또는 5.1 조에 따라 관리구에서 승인한 경우 해당하는 벌금을 포함한 고객의 연체 금액이 대체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될 수 있다. 대체 납부 일정은 관리구가 정한 매월 정기 납부 기한과 일치하지 않거나 그 횟수가 적은 정기 일시불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고객은 관리구에서 정한 기한까지 해당 연체 벌금을 포함한 연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리구에서 제공하는 대체 납부 일정 이후 모든 청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도 요금 및 비용에 대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대체 납부 일정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명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체 납부 일정의 조건에 따라 고객은 별도의 연체 금액에 대해 별도의 대체 납부 일정, 상환, 임시 연기 또는 감액을 요청할 수 없다.

5.3 상환. 상기 4.4 조 또는 5.1 조에 따라 관리구에서 승인한 경우 해당하는 벌금을 포함한 고객의 연체 금액이 대체 납부 일정 이내의 상환될 수 있다. 상환이 승인된 경우 해당 벌금을 포함한 연체 금액은 상환 기간의 월수로 균등하게 나누며, 추가 금액은 고객의 정기 월별 청구서와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고객은 관리구에서 정한 기한까지 해당 연체 벌금을 포함한 연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리구에서 제공하는 상환 일정 이후 모든 청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도 요금 및 비용에 대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상환 일정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명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상환 일정의 조건에 따라 고객은 별도의 연체 금액에 대해 별도의 대체 납부 일정, 상환, 임시 연기 또는 감액을 요청할 수 없다.

5.4 임시 납부 연기. 상기 4.4 조 또는 5.1 조에 따라 관리구에서 승인한 경우 해당하는 벌금을 포함한 고객의 연체 금액이 원래 기한 이후 6 개월 이내의 일정으로 임시적으로 연기될 수 있다. 고객은 관리구에서 정한 기한까지 해당 연체 벌금을 포함한 연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리구에서 제공하는 연기 납부 계획에 상응하는 모든 청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도 요금 및 비용에 대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연기 납부 계획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명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임시 납부 계획의 조건에 따라 고객은 별도의 연체 금액에 대해 별도의 대체 납부 일정, 상환, 임시 연기 또는 감액을 요청할 수 없다.

5.5 납부 감액. 응급 또는 긴급 상황에서 고객은 해당 벌금을 포함하여 과거 연체금의 일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미납부 금액의 25%를 부분적으로 감액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법에 따라 다른 요금 납부자에게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정도의 감액은 승인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부분 납부 감액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명받는다.

6. 수도 요금 청구서의 검토 또는 이의 제기 요청 절차.

6.1 청구서 검토 요청 마감일. 고객은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관리구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수도 서비스 청구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 정책에 따른 청구서 검토에는 별도로 적용되는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채택한 관리구의 수도 사용 요금이나 기타 요금에 대한 검토 또는 이의 제기가 포함되지 않는다. 6.1 조의 목적 상 청구서는 관리구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5 일 후 고객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며, 고객의 서면 검토 요청서는 우편으로 배달된 경우 발송된 날짜에, 정상 영업 시간 중에 이메일이나 개인 서비스로 구청에 배달되는 경우 전송된 날짜에 고객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6.2 관리구 검토. 기한 내에 제출된 수도 서비스 청구서의 서면 검토 요청은 관리구 총괄 관리자가 검토하고 결정하여 고객에게 서면으로 결과 통지를 보냅니다.

6.3 이사회 이의 제기. 상기 6.1 조에 따라 청구서 검토 요청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한 모든 고객은 이사회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요청을 제출하여 6.2 조에 따라 내려진 관리구의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본 서면 이의 제기 요청서는 고객이 6.2 조 관리구 결정 통지를 수령한 지 15 일 이내에 관리구가 수령하여야 한다. 6.3 조의 목적 상 관리구의 결정 통지는 관리구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5 일 후 고객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며, 고객의 서면 이의 제기 통지는 우편으로 배달된 경우 발송된 날짜에, 정상 영업 시간 중에 이메일이나 개인 서비스로 구청에 배달되는 경우 전송된 날짜에 고객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제기 통지를 받으면 관리구는 차기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가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한다. 이사회가 확인할 수 있는 이의 제기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는 이의 제기한 고객에게 고지된다.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6.4 수도 서비스 보류 이의 제기. 고객이 이사회가 확인할 수도 요금 청구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적시에 제출한 경우 관리구는 이의 제기 신청이 보류되는 동안 고객에게 용수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7. 저소득 고객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

7.1 수도 재연결 비용 제한 및 이자 면제. 관리구는 하기 7.2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증 가능한 문서를 통해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임을 관리구에 증명할 수 있는 고객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a) 모든 재연결 서비스 비용과 실제 재연결 비용을 정상 운영 시간 동안 50 달러 이내, 비정상 운영 시간 동안 100 달러 이내로 제한한다. 이 제한 한도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노동 통계국의 모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CPI-U)의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b) 연체 청구서에 대해서는 12 개월마다 1 회씩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7.2 자격. 상기 7.1 조의 목적 상 (a) 고객 가구의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Supple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 Program 또는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 Program 또는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 Program 을 이용하고 있거나 (b) 고객이 위증의 처벌에 따라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임을 진술한 경우 관리구는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의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인 것으로 간주한다.

8.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자 또는 거주자가 지역의 고객이 되기 위한 절차.

8.1 적용 가능성. 본 8 조는 주거 서비스의 소유주, 지주,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수도 서비스를 받는 거주지(들)의 실 세입자 또는 사용자 대신 공식 고객으로 표시되어 서비스가 미납으로 인해 중단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8.2 관리구 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 관리구는 한 명 이상의 세입자 또는 사용자가 계정의 후속 청구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데 동의하고 관리구 규칙 및 규정의 요건에 따른 수도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 주소의 실제 거주 세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 또는 마스터 미터를 둘 이상의 주거지 주소 또는 주거 단위가 이용하는 경우 미터기가 제공하는 거주자 또는 사용자 중 1 명 이상이 계좌에 대한 후속 요금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데 동의하고 구 규칙 및 규정의 요건에 따라 수도 이용 약관에 동의한다면 관리구는 별도의 거주자에게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관리구가 해당 계정의 후속 요금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데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주자나 사용자에게 선택적으로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물리적, 법적 수단이 가능한 경우 관리구는 관리구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후속 요금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기로 동의하는 거주자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8.3 사용자 또는 거주자 검증. 체납액에 대한 연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관리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새로운 고객이 되려는 거주자 또는 사용자는 계좌 연체 기록이 있는 기존 고객이 소유주, 지주, 관리자 또는 운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관리구의 재량에 따라 검증 문서는 임대 계약서, 임대 영수증, 거주자 또는 사용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부 기관 문서 또는 그 밖의 체납자 계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 관계의 증거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9. 정책 및 특정 서면 통지를 위한 언어. 본 정책 및 서면 통지는 관리구 서비스 구역 내 고객의 10%

이상이 사용하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및 기타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10. 기타 구제책. 관리구는 수도 서비스 중지 외에 수도 요금, 서비스 요금 및 관련 벌금의 미지급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모든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구제책은 청구 또는 법적 조치, 미지급금 인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리구에 유리하게 청구 또는 법적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 관리구에는 변호사 수임료 및 경비, 고문 요금 및 비용, 누적 이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모든 비용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 기타 고객 사항 위반에 대한 수도 공급 중단. 관리구는 본 정책에 명시된 미지급 이외의 모든 위반에 대하여 구 조례, 정책, 규칙 및 규정 또는 기타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법의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위반에 대하여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

12. 발생한 수수료 및 요금. 본 정책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조례, 정책, 규칙 및 규정 또는 기타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법에 따라 고객과 관리구가 부담해야 하는 요율, 수수료, 요금, 벌금 또는 기타 부채는 이에 명시된 대로 지불 기한을 유지하고 지불해야 한다.

13. 관리구 직원의 결정. 이 정책에 따라 관리구 총괄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결정은 지명자가 결정할 수 있다.